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10
----------	-------

발의연월일 : 2026. 4. 14.

발 의 자 : 황명선 · 염태영 · 김기표
이해식 · 이개호 · 백선희
김현정 · 송재봉 · 이학영
임오경 · 박정현 · 손명수
김준혁 · 박 정 · 박군택
김문수 · 부승찬 · 복기왕
송옥주 · 최혁진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지급되나, 산업 현장에서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 이에 사용자가 피보험자로 하여금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고용보험 운영의 공정성

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등).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로 하여금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8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로 하여금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생략)</p> <p><u><신 설></u></p>	<p>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사업주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로 하여금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제118조(과태료) ① -----</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로 하여금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한 자</u></p>
<p>4. ~ 8. (생략)</p>	<p>5. ~ 9.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p>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